
입 법 정 보

2016-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6
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7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8
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9
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1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2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3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4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4
1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15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5
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7
1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8
18.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9
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0
22. 「치료감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1
23.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23
2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24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5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28.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27
3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8
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9
3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9
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0
34.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0
3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1
3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2
3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32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33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34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35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36
4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6
45.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6
4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7
47.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8
48.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수산부) ...	39
4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41
5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41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42
5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정자치부)	43
5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4
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5
5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45

5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6
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46
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6
6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47
6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9
6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9
6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50
6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50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1
66.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2
67.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53
6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3
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4
70.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5
71.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5
72.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6
73.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6
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58
7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59
7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60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61
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61
7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2
8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3
8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64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위원회)	65
8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65
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66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67
8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67

8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68
8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9
8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0
9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0
9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71
9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2
93.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농림축산부)	74
94.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74
95.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75
96.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6
9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77
9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8
9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9
100. 「노인복지법시행령」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0
1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81
10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81
1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82
10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83
1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83
1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84
1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85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85
10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86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규모에 따라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단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구역을 지정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간 재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안 제34조의2)

- 1) 환경부가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도시공간계획 수립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성 및 활용이 미흡함
- 2) 도시지역의 특성상 친환경적인 공간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이 필요하므로 도시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안 제43조의2)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의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등(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 1)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동 재원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반환사업에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2) 현재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자의

편의 및 채납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선금지급(안 제50조제1항)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초기 자금확보 등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 전이라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안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성 지속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지정후 3년마다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실시에 대하여 부령 및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7. 22.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12949호 2014.12.31. 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한시조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효과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성이 낮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법률 용어가 ‘징수’와 ‘환수’로 혼용되고 있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환수’로 통일함(안 제22조)
- 다. 개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장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그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4조제3항)
- 라.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제3항, 제44조)
- 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200여 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상 수출의 정의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규정
- 가. 제2조제3호마목 신설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

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조세 외의 금전수입의 범위,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지방세외수입 정의에 따른 조세외 금전수입 범위의 명확화
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신설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징수촉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나.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라. 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

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가. 주식 혼합비율 기준 폐지(안 제3조, 제4조)
1) 주식은 혼합식으로 하며 혼합비율을 쌀 8, 잡곡류 2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수급 곤란 및 잡곡류 시장가격의 상승, 보호소년의 쌀밥 선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부식의 다양화 및 대용식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혼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1) 500만원을 초과 별급형 선고인원 비율 : 2012년 2.5%년, 2013년 2.8%, 2014년 2.9%, 2015년 3.1%

2) 주식 혼합식 및 혼합비율 기준을 폐지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식 혼합여부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

3) 잡곡류 시장가격 상승 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보호소년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단을 운영,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피복·침구 등의 급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 1,2)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년단복 폐지, 보호소년의 취향을 고려한 러닝셔츠 외 반팔티셔츠 품목 추가, 내용연수에 관한 정의 명확화 등 전반적 규정 정비 필요

※ 소년단복은 과거 소년원에 소년단(스카우트)이 조직되어 있을 때 사용되었으나 현재 소년원에는 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음

※ 기존 내용연한의 정의 규정은 ‘물품을 계속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내용연한 산정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 별 혼선이 있어왔음, 내용연수로 수정·명확화

2) 소년단복 규정을 삭제하고, 러닝셔츠 품목을 보호소년 취향을 고려하여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로 변경하며, 내용연수에 대한 정의를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되, 신발, 그 밖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함’으로 개정

3)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 개정시 “유치소년” 규정 신설에 따라 위탁소년복을 “위탁 또는 유치소년복”으로 개정하고, 이불 지급기준 규정을 실제 지급현황과 동일하게 ‘겨울용’, ‘여름용’으로 구분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

다.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연필,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의 연간 급여량이 일정 수량으

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연필, 볼펜, 지우개, 풀의 연간 급여 기준량(연필 18, 볼펜 12, 지우개 6, 풀 2)을 공책 등 다른 학용품과 같이 “적정량”으로 통일
라. 생활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4)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3개월에 한번 씩 칫솔을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현행 1인당 칫솔 연간 급여량을 4개에서 6개로 개정

마. 기타 규정 정비 및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에 “유치소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규칙에 포함하고, 주·부식 기준열량 단위를 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kcal)로 명확화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지난 몇 년간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고액의 벌금을 사실상 면탈하는 이른바 ‘황제노역’이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노역장유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제477조)은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벌금미납자가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한편, 공무원범죄특례법상 특정 공무원범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부가형(附加刑)인 몰수 추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영장에 의

한 압수수색 및 검증, 과세정보 등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형집행을 위하여 이미 도입된 재산추적 수단을 주형(主刑)인 벌금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벌금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정보 확인, 계좌추적, 일반기업이나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벌금 집행을 위하여 재정진술서 청구, 신용정보 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발견절차를 두는 등 외국 입법례도 벌금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500만원을 초과¹⁾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으로서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등, 2. 서류 등에 대한 제출요구,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4. 과세정보의 제공요청, 5.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6.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7.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등을 신설하여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수단을 확보하고, 제3자에 대하여 재산추적을 위한 처분을 위해서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재산추적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함(안 제477조의2 신설).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백두대간 마루금을 등산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내 「초지법」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그동안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하던 전기통신시설의 설치를 핵심구역까지 확대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산불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자 함

-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1항 제3호)
-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의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를 허용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등의 재난신고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 제1항 제11호 신설)
- 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체험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3호 신설)
-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15조)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함
- 나.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위해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8. 24.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상 학위와 경력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제출 의무 도입(안 제4조의5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완화(안 제9조의3,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의 건축물 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형질변경 면적기준을 완화함
- 다.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확대(안 별표 3의3)
산림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에 암벽등반, 로프체험, 레일바이크 등을 추가함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7. 15. • 마감일자 : 2016. 7. 22.
-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 등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공포, 8. 30.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1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입법예고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29.

○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식의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29.

○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안벽, 교량, 방파제 등의 공사는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 중에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준공을 허용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

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과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해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 준공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제1항 및 52조제1항).

마.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과 관련하여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29.

-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대표자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자치 의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나.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체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관리할 수 있음.

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

현행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준용함

16. 급경사지 제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 주체와 용어 등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에 따른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나.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안 제5조제1항)

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용어 변경 및 계측업

자의 결격사유에서의 이중규제 개선(안 제23조제4호, 안 제28조제4호)

1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7. 25.

○ 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연안해역 안전관리 책임기관 명확화
나. 체험활동 신고방법 개선 등 업계활성화 방안 마련 및 현장 법 수용성 제고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 가.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1) 연안체험활동 관련 업계 현실을 반영, 현행 체험활동 운영자 개념을 사업자·운영자로 세분화
- 2) 운영자·사업자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등 포함)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나.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방식 변경 (안 제5조)

- 1)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토록 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위원에 광역지자체 국장급 위촉, 기존 지자체 의견 수립 방식을 결과 통보로 변경

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의무 명확화(안 제9조)

- 1) 지자체별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등 연안 안전관리규정 이행 담보

* 연안안전관리 규정 : 작성 시행→국민안전처장관 / 이행 준수→지자체

라. 신고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기관 변경 및 시스템 도입(안 제12조)

- 1)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 2)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 정지·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바. 안전교육 위탁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26조)

- 1)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18.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8.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03호, 2016.5.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 2) 할인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 3)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4)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7. 18. • 마감일자 : 2016. 8. 29.
- 지방재정을 망라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정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15개)으로 확대하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으로 함.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정보 공표시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도록 명시하고, 공표사항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기관간 비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19. • 마감일자 : 2016. 8. 29.
- 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는 기술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개인 감정평가사가 배제되고 있음
-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 경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법인 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 가. 수익용기본재산 평가 주체 확대(안 제10조)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19. • 마감일자 : 2016. 8. 29.
- 가. 사회맞춤형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원제한이 없어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빈발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산업체의 글로벌 분야 직무교육 수요 충족 및 국내외 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22. 공포, 2016. 9.23. 시행)되어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계약학과 정원기준 조정(안 제8조제5항)

- 청년취업 제고에 기여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원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20/100으로 조정.
-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00을 초과하여 운영 가능하다. 세부운영기준의 교육부 장관 위임(안 제8조제10항 신설)
- 계약학과 학사·정원·권역 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
- 다. 산업교육기관이 해외대학과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제9조 제2항 신설)
- 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안 제15조의2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2.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7. 19. • 마감일자 : 2016. 8. 30.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치료감호법 의 제명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판결 전 조사(안 제25조 신설)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함.

다. 검사의 집행지휘(안 제26조 신설)

검사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함.

라. 치료명령 집행의 준비 등(안 제27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마.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28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바. 치료명령의 집행(안 제29조 신설)

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함.

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 확인(안 제30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안 제31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부담 결정 기준 등(안 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국가 부담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카. 용어의 정비(안 제11조)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함

23.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19. • 마감일자 : 2016. 7. 22.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 준수사항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행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자체무게 12kg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로 변경함에 따라(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7.4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유희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개발계획 변경 등(안 제2조~제5조)
 - 1)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위치도, 지형도 등)과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1년 이내 시행기간 변경 등) 및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
 - 2) 법에서 위임한 지정해제 요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로 규정

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규칙 제6조~안제9조)

- 1) 핵심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2) 핵심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
- 3) 항만시설의 사용범위(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와 항만시설 및 항만 이외시설 사용조건(항만시설 사용으로 항만기능이 저해하지 않을 것), 사용절차(신청서 작성 후 해수부장관 승인) 규정

2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유희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 호, '16. 5. 29 공포 /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태조사 범위 등(안 제4조~제6조)

- 1) 기본계획의 내용 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
- 2) 실태조사의 범위(해양산업 집적·융복합 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방법(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안 제5조~제9조, 제11조, 제15조)

- 1) 시도지사는 클러스터 지정 요청시 지방해양수산청과 위치·면적, 항만시설 활용, 핵심산업 등을 사전협의하고 결과 반영
- 2)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규모는 10만제곱미터로 하고 해당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을 갖도록 함

다.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제25조)

- 1) 핵심산업의 집적·융복합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간 교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조치와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근거 규정
- 2)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지정대상, 지원범위 규정

라. 개발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안 제26조~제35조)

- 1)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2)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 포함내용(개발사업 위치, 면적, 기간 등) 및 승인절차(시행자 지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승인신청) 등 규정

마.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기준(안 제36조~제37조)

- 1)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실시계획 승인·변경 협의, 보고·자료 제출 검사 등 일부권한은 클러스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 2) 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시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설정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 ‘16. 12. 1 시행)하였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신청시 필요서류 등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 ‘16. 12. 1 시행)하였으며, 수협은행 설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절차, 어촌계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수협은행 세부업무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28개 조문)
 - 1) 수협법 에서 수협은행은 국가 등이 위탁하는 사업과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수협법 시행령 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2)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및 부수업무, 중앙회 및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의 세부 내용 규정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관련 조문 정비와 국가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 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23조의2 등 9개 조문)
 - 1) 수협법 에서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 2) 설립기준은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이 3억원이상 등으로 정하고, 설립절차는 조합 설립 절차 준용함
- 다. 비조합원 사업이용제한 기준 등 신설(안 제20조의2 등)
 - 1) 제2금융권 가계 대출 보완 대책 마련시 비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 하도록 정한 관계 부처합의 사항 반영 할 필요
 - 2) 회원조합 신용사업 중 비조합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당해 연도 총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함
- 라.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인가 및 해산 요건 완화(안 제4조, 제8조)

1) 어촌계는 자격을 가진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계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당연 해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립 요건과 해산 사유를 완화할 필요

2) 도서 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존 설립 요건 충족이 어려운 어촌계에 도움

마. 수협 지도감독을 위한 세부절차(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62조)

1) 수협법 과 수협법 시행령 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92개)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

2) 수협법 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2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설)

나. 과징금 미납으로 인해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때에는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안 별표 2 제1호나목3) 신설)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7. 25.

○ 조합의 공제사업 인가요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 인가요건을 신설하고, 조합이 공제사업 신청시 인가요건 확인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제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가. 공제조합의 전문인력, 시설 및 설비 등 인가요건 신설 (안 제3조의5)
 - 1)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험계리사(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인가 요건을 마련하여 부실 공제사업자를 선별하고자 함
 - 2) 전문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여 외부 위탁할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나. 공제사업 인가절차 신설 (안 제3조의6)
 - 1) 공제사업 신청 조합이 제출할 신청서류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여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 제3항, 제70조제4항)
은행지주회사가 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나.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1
-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 가. 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 근거 규정 마련(제2조 제5항 개정)
 - 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20. • 마감일자 : 2016. 8. 29.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0.

- 환경 R&D 주요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조정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이행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으로 기업 지원 확대

34.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7. 25.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가.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른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에 추가(안 제26조 제16호 신설)

3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0.

- 승진심사시 수화·점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인정하고, 경찰
대학 졸업생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들을 합리적
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계발을 독려(안 별표4)
나. 경찰대학 졸업 경위의 군 전환복무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
한 근무기간 산정에 반영(안 제35조)
다. 기존 법령상 미비했던 규정의 합리적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 내 부표(1~5)로 규정되어 있던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평가기준”을 분리하여 [별표8] 신설

- 2) 승진시험 응시자의 근평이 없는 해의 점수는 심사승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 3) 교육경력 및 직무교육 항목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 제6호, 제7호서식)

3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0.
- 승진심사 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에 교육관련 항목이 추가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진 교육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근평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
- 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따라 기본교육 및 상시학습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됨에 따라 교육훈련 항목 정비
 - 1)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력” 항목 삭제(안 제22조)
 - 2) “직무교육 가점” 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안 제11조)
- 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근평예외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일반휴직자 등에 비해 불이익을 야기하여 특례조항 삭제(안 제8조)
- 다. 기타 미비했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신설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4조, 제11조 등)
 - 2) ‘전투경찰대’ 등 명칭을 ‘의무경찰대’ 등으로 변경(안 제5조)
 - 3) 경찰특공대 등 특수분야 경찰관에 대한 별도 승진TO 배정등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11조)
 - 4) 매 분기 또는 매월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던 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1회 또는 2회” 실시토록 변경(안 제39조)
 - 5) 대령에 규정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순위결정 조항” 을 삭제하고 부령에 관련규정 신설(안 제12조)

3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0.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 제26조 등)”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도록 규정 신설

다. 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 ~ 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3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23조의1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422조의2)
 -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 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안 제55조)

- 1)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중복되는 ‘재정진단-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함
- 2)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55조의2)

- 1) 현행 시행령 상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
- 2)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탁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실손공제의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일부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탁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탁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85조의2)

1)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 발생

2)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여신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30.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4조의3)
은행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4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
- 현행 규제의 재검토 연계조항의 검토 범위가 재검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몰정비계획 반영

45.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7. 21. • 마감일자 : 2016. 8. 10.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

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 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 다. 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4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8. • 마감일자 : 2016. 8. 17.
- 악취저감기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현재의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시설의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의2)
 -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
- 나.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안 제9조)
 -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의 수

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4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9. 1.

-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료자동채취장치의 현장 적용 근거 마련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에 대하여 수용 의무화(안 제6조)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지정 권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함
나. 용어의 명확화(안 제7조, 안 제17조)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은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적용되나 신고대상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용어를 수정(신고대상시설 → 악취배출시설)하여 명확화

다. 악취기술진단업 개방(안 제16조의3)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
라. 생활악취 규제 권한 위임(안 제16조의6 개정)

생활악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악취 관리 시행

마. 시료자동채취장치 현장 적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악취는 공기 중으로 확산 전에 발생즉시 신속히 포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한 시료채취의 법적 근거 마련

바. 악취기술진단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안 제22조)

악취기술진단업 등록취소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마련

사. 부당행위 악취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27조 및 제30조)

부정하게 악취기술진단업을 등록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

48.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국내의 해양환경문제는 육상 보다 상대적으로 뒤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분야로, 육상 중심의 현행환경법 체계에서는 더욱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는 등 정부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유효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순환형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고시나 지침에 근거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 산재된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함에 따라 실행력의 확보가 곤란함.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행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삭제됨에 따라, 오염물질, 폐기물, 기름 등 유사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등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에서의 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를 정립하고자 함.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등 관리 대상이 되는 물질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 관리책무, 관리방법·수단 및 지원체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 시대에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의 모든 오염물질의 종착지인 해양

에서의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가.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해양배치, 정화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해양폐기물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역관리청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에 따른 예외적인 배출, 매립, 배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유입차단 조치, 부유하거나 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 방법 및 범위, 정화책임, 정화사업의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아. 해양폐기물 등의 유효활용 용도, 유효활용사업의 신고 및 유효활용사업의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방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차. 해양폐기물 전문기관 종류 및 지정, 결격사유, 금지의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 카. 청문, 부담금, 재정 및 기술적 지원,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전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4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8.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5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법률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명시

나. 검사·질문의 대상에 제공자 외 “관계인”을 추가 (안 제8조)

검사·질문의 대상에서 누락된 “관계인”을 추가하여 법률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안 별표1)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

5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그동안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사가 보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손실보전준비금 의무 적립 규정을 개선,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노력을 촉진시키고 관련부처 보험심의위원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손해평가인 자격 취소 사유에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 손해평가인이 스스로 자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특성, 심의내용, 타 부처 유사 위원회 등을 검토하여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변경

나.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요건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만 규정되어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관리 애로
-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 “스스로 자격 취소신청을 요청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이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다.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등(안 제21조제1항)

- 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조항 삭제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11.

○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정부조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 처 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열거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나. 정원감사 실시근거 신설(안 제9조의2)

1)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을 명시

5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지방회계법」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안 제5조)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 및 지출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안 제13조 내지 제14조)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위원이 결산검

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 아울러, 감사위원이 직무관련 비리사실 발생, 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회계책임관에 의한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6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안 54조)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지급,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조의금·축의금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마.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재정통계의 검증·분석 및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방회계제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회계분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5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

소의 상담사실 확인서 추가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신청서 등 서식(12종) 간소화

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나.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 다.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 라.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5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7. 27.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 나.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5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2016년 2월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
- 차량영상정보의 범위,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31.

-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규정 마련 필요
- 통행료 부과·수납 및 감면,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대한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2. • 마감일자 : 2016. 8. 22.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정함.

-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 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동물·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6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현행 환경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석면피해신고센터(개정안에 따른 경우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석면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 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의 주체를 변경하려 할 경우 법률의 관련 조문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따라서 석면피해구제업무를 처리하는 운영기

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등)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주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기관으로 변경함.

다.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 변경(안 제21조제1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업무는 현재 한국환경공단(개정안에 따를 경우 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서로 연관된 업무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 업무도 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라. 환수금 채납시 징수 근거 신설(안 제21조제2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자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실효성 있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금 미납시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이관(안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모두 운영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운영기관의 업무가 과중하고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운영기관에 설치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환경부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신설 등(안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현재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업무 정지·지정 취소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정지·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16.6.21. 국회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포함(제47조제3항)

6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요구되나, 심사·재결과정에서 학연·혈연·지연 등 이해관계의 개입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우려되는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안 제44조의2)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 진술 또는 감정, 대리인으로서 관여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 2)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忌避) 결정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

6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양식수산물 피해사실 확인 및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을 수산물품질관리사까지 확대하고자 함

6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포, 0000.00.00 시행)에 따라 국립과학관의 등록과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또한 관련 서식에 국립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립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서 제출제외 규정 삭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의 과학관과 영 제7조제1항의 과학관에 국립과학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과학관 등록신청서의 제출제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중 ‘과학관의 구분’에 국립과학관을 추가함.
- 나. 국립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제출기관 명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개정으로 국립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
- 다. 과학관등록증 재발급 주체 추가(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립과학관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관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

6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립과학관의 등록,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 국립과학관의 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증 발급 신설(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동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나.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 연장(제7조의4 제2항)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함

- 다.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 7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법 제6조의9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함에 따라 보존기간 등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토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료적 가치가 높고 훼손, 소실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유물에 대한 별도의 보존, 관리 기준과 시책을 국립과학관에 위탁하여 마련, 시행할 수 있음.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16.2.3일자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 14019호)에서 위임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1부터 별표8)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JWH-030유사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별표1부터 별표7의2까지 마약류 품명 및 화학명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 ‘15.5월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 계획·실적 등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약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 ‘16.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라.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 1) 현행 과징금 산정은 업체의 전년도 총생산(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2) 이에, 1일 업무정지 해당 금액을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도록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66.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 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표 1의2)
-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ml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

67.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민원(굴착허가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에 대한 난해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
- 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천자원부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개정 (안 제13조)
- 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로 정정 (안 제17조)

6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청구문서 소관 공공기관 이송시 기관이송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정보공개 청구건외 민원처리 방법 일원화, 정보공개일시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 안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관이송 통지서 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문서결재 통

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의 명칭을 정보공개 청구의 통지서 로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다. 정보공개 수수료 추가납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안내 실시

라.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서식에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 명시

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 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정보 소재 안내로 갈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함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명확화(제2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변경

나. 민원 처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을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

다.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공개일시 연장(제12조제2항)

1) 수수료 납부 지연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으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라. 정보 소재 안내 개선(제14조제1항제5호)

1) 정보 소재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

70.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지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전부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71.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지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적극 활용 의무화,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 가.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7조)

-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 안 제12조)

-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 안 제13조)

-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마. 국민제안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제안 심의 근거 마련 (안 제16조)

-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 규정상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 (안 제17조)

-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8조)

-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인사특전 관련 법 체계의 일치를 위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 변경 (안 제19조)

-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등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변경

자. 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 (안 제28조)

-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72.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전부개정된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73.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7. 25. • 마감일자 : 2016. 9. 5.

○ 모법인 「민원처리법」 개정(' 15.8.11. 전부개정, 2016.2.12. 시행)으로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며,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 가.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1) 모법인 「민원처리법」의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
- 2)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규정

나.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7조)

-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심사 대상에서 배제
-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 안 제12조)

-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 안 제13조)

-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마.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안 제17조)

- 1)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

바. 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 (안 제18조)

-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9조)

-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 (안 제26조)

-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6. • 마감일자 : 2016. 9. 5.

○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고, 현행 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합의사항의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 부여(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분쟁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

나.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등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

현행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개정함

다. 위반행위 처분기간의 제한(안 제32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43조)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7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6. • 마감일자 : 2016. 9. 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리점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가.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의 추가(안 제2조)

대리점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판매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함.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함.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리점법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회의개최, 분쟁조정 신청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정권고(안 제19조)

대리점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 시정권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과징금의 부과(안 제20조 및 별표1)

- 1) 대리점법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반 금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2)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안 제21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기준 금액,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7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7. 26.
- 마감일자 : 2016. 9. 5.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1) 현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하고, 성능시험 중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유래한 잔여검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임상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시험 자료범위를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허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허가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허가기간 단축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6. • 마감일자 : 2016. 9. 5.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6. • 마감일자 : 2016. 9. 5.
- 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그 학교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그 투자 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한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하여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26조제5항)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

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전출하는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의 이익잉여금 전출 기준 및 절차(안 제231조제3항 단서 신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익잉여금의 전출 허용 비율을 이익잉여금 100분의 40 이내로 정하는 등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다.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 제한(안 제231조제4항 신설)

국제학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학교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7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상향조정(현행 30% → 50%)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시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시기 현행화 및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제출(안 제7조제1항,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추진실적 보고시기를 매년 “5월말까지”에서 “7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보고된 실적이 미흡하여 보완 조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조정(안 제25조제1항)

-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다. 특수목적 차량 등 저공해차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 예외 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하기 곤란한 소방, 재난구조 등 특수목적 차량과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 구매가 곤란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라.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범위 현행화(안 제27조)
-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자동차를 현행에 맞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표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자동차”로 정정하고자 함
-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3제2항)
- 수시검사 취지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 바.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2제6호 신설)
-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인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의 저공해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안 별표8 비고 제2호 및 제3호 신설)
-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규정했던 PM·NOx 동시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등을 별표8 비고 제2호와 제3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8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시기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국회 보고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실적의 취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당초 정기회 개최 전(8월말까지)에서 연내 제출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8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위반시 과태료 조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총량사업장에 부착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적용대상 및 권고대상에 임차차량 추가(안 제24조제1항, 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보유차량 중 임차차량 비율이 56%('14년)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차차량도 포함하고자 함
 - 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위반 기관에 과태료 부과(안 제46조제2항)
 -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다. 운행제한 대상에 폐차 권고대상차량까지 확대(안 제28조의2)
 - 노후 경유차의 배출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미이행 차량 이외 폐차 권고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함
 - 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 신설(안 제34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이외에 추가로 기기 부착 의무가 부여한 경우에도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마. 과태료에 대한 근거조문 현행화(안 제46조제1항제4호)
 - 근거조문의 개정에 맞춰 조문을 변경(제26조의4제4항→제26조의4제6항)하고자 함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8. 1.
- 그간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창업·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의 범위를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 창업·벤처전문PEF의 정의 및 요건 신설(안 249조의 23)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출자액의 50%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운용할 것

8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7.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

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 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7.

-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8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인)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
준을 완화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
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
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32조)
 -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
 -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

8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산 림청)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현행법 제23조의3에서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으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유사법률에서 금지행위위

반 시 징역형을 대체로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안 제23조의3)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유사법률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8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방화의 징역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산림방화행위의 처벌수준을 완화하여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 대해 흡연 금지(안 제34조제2항)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나.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53조제1항)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현행 처벌수준을 유지하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하고자 함.

다. 벌금액 현실화(안 제53조제4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8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자 유형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입주기준 중 일부 계층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고 타 입주자 유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임

○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별표3)

1순위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을 마련하고 2순위 입주자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신설하는 한편, 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순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장애인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가능성이 낮고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격은 폐지함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완화조항 삭제(안 별표5)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기준 완화조항(평균소득의 100% → 120%까지 완화)과 재계약 시 소득기준 금액을 20% 증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8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7. 27.
- 마감일자 : 2016. 9. 5.

-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자 유형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입주기준 중 일부 계층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고 타 입주자 유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임
-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안 별표3)
1순위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을 마련하고 2순위 입주자격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신설하는 한편, 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순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장애인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가능성이 낮고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격은 폐지함
-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완화조항 삭제(안 별표5)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기준 완화조항(평균소득의 100% → 120%까지 완화)과 재계약 시 소득기준 금액을 20% 증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9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학원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확대로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규정(안 제33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던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측정의

무를 석면안전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9조)

현행법상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관리가 미흡하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를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

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위탁 가능 규정 삭제(안 제37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50조)

환경부장관 등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52조 및 별표5)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9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 법 시행 당시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상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석면해체작업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게끔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제49조)
- 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준용규정(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부령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제49조)
- 라. 지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을 조정함(안 제49조)
- 바. 「건축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1조 등)

9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환자들이 의료기관감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음압격리병실 확보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1인 격리병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설치(' 18.12.31일까지)
 -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경우 1개는 1/2개로 계상하며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합산

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1호 자목)

*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어야 함

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나목, 마목~사목)

- ①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②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③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④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규정 삭제

라.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 ①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② 병상 1개당 면적을 1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③ 병상 3개 당 1개의 손 씻기 시설, ④ 병상 10개 당 1개의 격리병실을 구비

마.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 (안 부칙 제3호)

-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 ' 18.12.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 격리병상을 설치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도 인정

*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위기 시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

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

· ' 18.12.31일까지 1개 이상의 격리병실 확보 (샤워실 별도 설치하는 의무에서 제외)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 내 병상 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4) 중환자실 시설 개선

-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5m 확보 (발쪽은 예외 가능)
- * 병상당 면적(1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의무는 제외
- ' 21.12.31일까지 격리실 확보 (10병상 당 1개, 최소 1개는 음압병실)

93.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8. 17.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운영하려는 것임

94.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까지)
 -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라.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마.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95.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15.12월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상시해제면적 및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6차산업화 등 농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달성하고자 함.

또한, 농어촌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안전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따른 상시해제면적 확대 등(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1) 여건 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을 2ha이하 → 3ha로 확대

2)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 확대(제2호: 농산물 →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 상향 및 허용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범위 확대

3) 농업보호구역 내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 시설범위 확대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추가

4)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

종교시설·수련시설 등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 상향

나. 농어촌발전 필요시설 확대 및 복지·안전 환경 조성(안 제29조)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허용범위 확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축물·시설물 위 → 공공기관 소유까지

2) 농업진흥구역 내 응급의료헬기장 및 주민대피소 설치 허용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과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추가

3) 농업진흥구역 내 가축방역거점시설 설치 허용

농업용·어업용·축산업용 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축협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시설’ 추가

다. 농지투기 방지 및 관계 법령 개정 후속조치(안 제33조, 제44조, 제78조)

1)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추가

2)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농업보호구역에 장관고시로 허용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

3)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사무의 범위 보완

시·도지사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사무 범위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용도 추가

96.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7. 28. • 마감일자 : 2016. 9. 6.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

검토 해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 6. 24.)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규정들은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규제와 관련 없는 단순 서식 또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를 해제함

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9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관련 규정 정비(안 51조 및 57조 개정)

-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및 채무회생법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문화하고,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 관련 회사들의 과징금 연대 납부의무, 과징금 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급가산금 산정기준, 체납 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손처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을 명문화함.

다.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66조 개정)

- 공정위의 출석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함.

라. 과징금·과태료 중복부과 규정 정비(안 67조 신설)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9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2016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등의 각종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관련 구체적 절차(안 제1조의 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협의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안 제26조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으로 규정

-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 인정정지 기준(안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경력신고서, 경력증 발급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행정처분기준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을 규정(별표 3의2)

9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2016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환경영향이 큰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불필요한 계획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안 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여부를 결정

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규정(별표 2의2)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지 타당성 검토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3) 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실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협의 생략이 가능한 요건 (안 제28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 신설)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인 등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에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 절차 등 (안 제69조의2~제69조의6 신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변경(별표2 개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립공원계획 등 29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등 10개 계획을 대상에서 제외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사실 공표 등을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12.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폐쇄명령 미이행시 시설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요청,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의무위반사실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받은 노인보호, 치료 등 업무를 수행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 마련(안 제20조의7 신설)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요청 절차·범위 (안 제20조의8 신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안 제20조의9 신설)

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 절차와 방법 등 필요사항(안 제20조의 10 및 11신설)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서식 및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회신, 노인학대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안 제29조의17 신설, 안 제29조의19 신설, 안 제29조의20신설, 안 제37조의

2 신설, 안 별지 20호의 16, 안 별지20호의 18부터 22호 서식) 등

1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한·EU FTA 발효 이후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다수의 FTA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한·중 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연장 운영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11조)
 - 1)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한·EU FTA 발효일('11.7.1)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던 것을 한·중 FTA 발효일(' 15.12.20)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함.
 - 2) 폐업지원금 지급시책 시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0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최근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상황에서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시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기간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합의(2015.11.30)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함으로써,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시책을 한·EU FTA 발효일('11.7.1)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하던 것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함.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보전비율 상향(안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산출 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0을 곱한 값” 에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5를 곱한 값” 으로 하여 피해보전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1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29.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동법 제24조에 따라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심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함

○ 가. ' 16.9.30에 시행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금산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의 연결권있는 주식 소유한도가 5%, 20%에서 5%, 10%, 15%, 20%로 세분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해진 기준인 10%, 15%에 대해서도 5%와 같이 사실상 지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므로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10%, 15%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금산법 제24조의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6조의2제3호)

금융위원회는 행정효율 차원에서 금산법 제24조제8항의 정기적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동법 제24조제6항의 심사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업무내용이 동법동조제 8항의 심사와 동일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다. 「주택저당채권 유통화회사법」 폐지(' 15.7.24)에 따른 금산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삭제 등 자구 수정

10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법률 인용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함. (현행 제6조제5항 삭제)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의 폐지(현행 제6조제5항 삭제)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인정 사항을 법률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함

1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9. 7.

-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대신 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청소년 치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등의 사무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함으로써 주민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에 “부모선택제 도입(안 제26조)” 및 위반 시 “처벌 전 시정기회” 부여(안 26조 및 안59조)
 - 1)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내 인터넷게임 지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모 등 친권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도 인터넷게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2) 그동안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 1) 현재,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바로 규정하고 있는 바, 침익적 행위인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2)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둠.

다.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안 제51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지방청소년 사무소의 설치 등의 사무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함.

1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8.

- 수입 시에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한 원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그 잠정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환급금 간의 상계를 허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원유 등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8.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며, 보세판매장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증진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신고 시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체납 관세등의 징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관장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합산

-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계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구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 나.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시 필요한 경우 독과점 등 국내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전 통지하는 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함.
- 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배우자,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추가함.
- 마.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 바. 보세공장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한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사용신고하는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면제함.
- 사.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의제대상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관을 추가함.
- 아. 체납 관세등의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금융회사등을 추가함.
- 자. 세계관세기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협약 2017”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 관세율 표를 전면 개정함.
- 차.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율 감축 일정을 2년간 유예하여 현행 관세 감면율 적용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10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7. 29.
- 마감일자 : 2016. 8. 18.

○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

기 위하여 엔젤투자 소득공제금액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추가함.